

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관광기념품 정의(안 제2조)
- 구미시 관광기념품 개발·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15조)
-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-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업체 지정(안 제17조~제18조)
- 사후관리 및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해제(안 제19조~제20조)
- 기념품 판매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(안 제21조)
- 별표 및 별지서식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그동안 우리시는 ‘구미관광 기념품 공모전’을 통해 구미기념품을 선정하여 홍보하였으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. 이에 관광기념품 개발·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‘경주의 찰보리빵’과 같은 구미의 대표 기념품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,
- 관광기념품 개발·육성위원회는 명확하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정하고, 기념품 및 제작 업체의 단순 선정이 아닌 기획, 생산, 판매 등의 종합적인 연계를 통한 참신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은 물론 사후관리 등 관광기념품 관리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